『군산 새만금지구 공급설비 건설공사』 입찰 관련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

2014. 06. 17

한국가스공사

※ 본 답변은 '14.6.12 ㈜한양, 금호산업(주), 대보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건설㈜, ㈜한화건설 질의 및 유선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적정성심사 관련 : 공급건설공무팀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	Q. 입찰시 제출하는 입찰금액 사유서 부수 및 형식?	A. 입찰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책으로 제본하여 12부(CD 1개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본 불량으로 일부 내용이 분실될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공사가 배부한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이하 세부시행요령) '4'항 '마'호에 따라 절감사유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Q. 절감사유가 없는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A.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및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에 해당하나 입찰금액 사유가 없는 경우 제OO공종 "사유없음"을 명기하셔서 별도의 제본없이 공종별로 한 장만 제출토록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에도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합니다.	
3	Q. 세부공종의 하위일위대가가 모두 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부공종을 일반자재로 평가하는지 여부? ex) 계측기기설치	A. 가이드라인 '1'항 '가'호 '5)'목 '가)'번에 의거하여 '계측기기설치' 세부공종은 일반자재로 평가합니다.	
4	Q. 노무비로만 구성된 세부공종이나 일위대가가 없는 경우 일반자재로 평가하는지 여부? ex)속도감지계재설치	A. 가이드라인 '1'항 '가'호 '5)'목 '가)'번에 의거하여 '속도감지계재설치' 세부공종은 일반자재로 평가합니다.	

<table>
<tr><th>순번</th><th>질 의 사 항</th><th>답 변 내 용</th><th>구분</th></tr>
<tr><td>5</td><td>Q. 동일세부공종 판단의 세부규정?</td><td>A. 품명, 규격, 단위 및 비목별(재/노/경) 단가가 모두 동일할 (띄어쓰기 및 대/소문자 구분 제외) 경우 동일세부공종으로 판단하며 특수문자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는 동일세부공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td><td></td></tr>
<tr><td>6</td><td>Q. 주/부계약자 분할에 따라 세부공종 및 간접비에서 통합본 금액과 분할본의 주/부계약자 합계금액이 상이할 경우 처리방법?</td><td>A. 통합본의 금액과 분할본의 주/부계약자 합계금액이 미세하게 상이할 경우, 통합본을 기준으로 부계약자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td><td></td></tr>
<tr><td>7</td><td>Q. 설계서 '호표'의 'G코드'로 된 것은 모두 견적단가인지 여부?</td><td>A. '호표'의 'G코드'는 모두 견적단가입니다.</td><td></td></tr>
<tr><td>8</td><td>Q.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 수량과 단가를 곱한금액과 합계금액의 차이 있는데,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td><td>A. 일부공종의 경우 수량과 단가를 곱한금액과 합계금액이 절사문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종기준금액 산정 및 적정성심사 시「30공종 분할내역서_통합본」에 명기된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td><td></td></tr>
<tr><td>9</td><td>Q. 심사공종이 아닌데「30공종 물량내역서」에 세부공종 단가를 기입해야하는지 여부?
ex)
<table>
<tr><th rowspan="2">품 명</th><th colspan="2">합 계</th><th rowspan="2">공종명</th></tr>
<tr><th>단 가</th><th>금 액</th></tr>
<tr><td>COLD BEND 운반거리</td><td>483,670</td><td>72,550,500</td><td>25</td></tr>
<tr><td>TRAILER
(운반비 산출근거)</td><td>4,397</td><td>483,670</td><td></td></tr>
</table></td><td>A. 심사공종이 아닌 경우라도 값이 연계되어있는 심사공종과 부합하게 단가 및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td><td></td></tr>
</table>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0	Q. 건축분야 'MESH SCREEN', 'U-BAND' 등 단가가 기재되고 노란색 음영이 칠해진 공종은 수정없이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A. 「30공종 물량내역서-건축」에서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 설계금액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공종은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할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에도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계약변경 시 상기 해당 공종들의 역무는 제외됩니다.	
11	Q. 산출내역서에 일반요율(직접노무비*8.4%)과 총액요율(직접공사비*4.02%)중 하나를 적용했을 때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산출내역서 작성 시 어떤 요율을 적용?	A. 세부시행요령 '3'항 '라'호에 의거하여 요율을 산정할 경우 주/부계약자의 금액을 합한 통합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통합본에 반영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12	Q. 간접비의 3/1000차이를 적용했을 경우 부계약자 간접비도 3/1000차이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 산출내역서 통합본에서 간접비에 3/1000을 적용한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산출내역서에도 동일하게 3/1000을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적정성심사 평가는 통합본을 기준으로 하며 간접비에 3/1000을 적용한 경우 계약체결 시 3/1000을 적용한 요율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13	Q. 부가가치세도 99.7%까지 투찰을 허용하는지 여부?	A. 세부시행요령 '3'항 '라'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산정 시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에도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합니다.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4	Q. 주요자재로 평가하는 자재는 비고에 '주요자재'라고 표기된 것인지 내역서의 품명에 '주요자재'의 하위 내역인지의 여부?	A. 주요자재로 평가하는 세부공종은 내역서에 주요자재로 묶여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우 '1. 주요자재', 건축분야의 경우 '1-5 주요자재'에 속해있는 세부공종을 주요자재로 평가합니다. 기계분야의 경우 주요자재로 평가하는 세부공종이 없습니다.	
15	Q. 재료비+경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또한 일반자재로 평가하는지 여부?	A. 세부공종이 재료비+경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에 따른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16	Q. 「30공종 물량내역서-분할본」에 부가가치세 산정이 누락됨?	A. 「30공종물량내역서-분할본」에 주/부계약자, 주계약자, 부계약자 총괄표에 부가가치세란을 삽입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합니다.	
17	Q.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공종 하위일위대가의 재료비를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사유서 작성 가능 여부?	A. 가이드라인 '1'항 '가'호 '4)'목 '가)'번에 따라 일위대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건은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18	Q. '조사금액 적용 오류' 평가 받을 수 있는 경우?	A. 가이드라인 '1'항 '가'호 '5)'목 '다)'번에 의거하여 조사금액 적용오류는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가 적용되는 세부공종에 국한하여 인정됩니다.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9	Q. 입찰 시 제출할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내역서가 30공종 물량내역서(군산새만금)_분할본 및 통합본인지 여부?	A. 입찰서는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산출내역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내역서는「30공종 물량내역서」의 분할본 및 통합본을 의미합니다.	
20	Q. 부적정공종이 아닌 공종에서 조사금액이 '0'원인 비목에 산출내역서 비목에 '0'보다 큰 단가 및 금액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 가이드라인 '1'항 '바'호 '1)'목 '아)'번은 부적정공종일 경우 적용합니다.	
21	Q. 가이드라인 1-나-1)-가) 및 1-바-1)-마)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 투찰하고 재/노/경 중 조사단가 초과 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또한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 투찰하고 비목 중 0인 비목에 0보다 큰 단가 혹은 금액 적용 시 평가방법?	A.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으로 투찰하더라도 재/노/경 각 비목의 단가를 절감사유서 제출없이 당공사 조사금액의 각 비목별 단가를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40점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으로 투찰하더라도 조사금액이 '0원'인 비목에 절감사유서 제출없이 '0원'보다 큰 단가 및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22	Q. 기계공사 26공종의 야적장 가설전기 세부공종들이 모두 경비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지만 비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각각 달리 표기되었는데 평가방법?	A. 질의하신 야적장 가설전기 세부공종들은 가설비용으로 금액이 모두 경비에 입력되어있습니다. 비고에 기입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상관없이 모두 '일반자재'로 평가합니다.	
23	Q.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주배관 가설비 세부공종의 경우 단가가 다른데 세부시행요령 '3-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A. '주배관 가설비' 세부공종의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단가가 불가피하게 상이합니다. 따라서 세부시행요령 '3'항 '자'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금액기입 시 설계금액 비율대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를 나누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설계내역서 관련 : 공급건설토건2팀 및 공급건설기계팀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	Q. 설계 시공 품에 대해 현장 시공 경험치 적용가능 여부?	A. 가이드라인 '2'항 '가'호 '5)'목에 의거하여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으로 적용된 품은 원칙적으로는 시공 경험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뢰성이 낮을 경우 절감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2	Q. 표준품셈 또는 견적으로 되어있는 품을 국토교통부 실적공사비 및 타 공공기관품으로 변경가능 여부?	A. 가이드라인 '2'항 '가'호 '3)'목 '아)'번 및 '2'항 '가'호 '5)'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3	Q.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장비의 버킷계수, 효율, 적재시간 등 변경가능 여부?	A. 가이드라인 '2'항 '가'호 '5)'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이드라인 '2'항 '나'호 '1)'목에 의거하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부적합 처리합니다.	토목
4	Q. 터파기공사에서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적재 및 운반 장비 변경가능 여부?	A. 터파기에 적용된 장비는 당공사가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한 것으로 이를 수정할 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5	Q. 현지 운반로 조사를 통한 운반속도 변경 가능여부?	A. 당공사의 운반속도에 대한 설계사항은 현장여건, 도로상황, 관련법규(제한속도, 교량 토과하중 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를 수정할 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6	Q. 'Semi-shield 기계경비' 공법변경 사유서 가능여부?	A. 'Semi-shield 기계경비' 공법변경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절감시공사유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입증할 경우 절감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단가산출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흡하여 타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7	Q. 'Semi-shield 기계경비' 사유서 작성 시 기 수행한 공사경험을 근거로 굴진시간 변경가능 여부?	A. 현장시공 경험치를 이용하여 절감사유서를 작성할 경우 증빙자료 및 가격자료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8	Q. 세부공종이 표준품셈 품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장비변경 및 시공량 품 변경가능 여부? ex) 인력굴착압입, 장비조립 및 해체(압입공사), 천공+분사(D800), PHC-PILE 설치(항타), 기층포설 및 다짐(인력), ASP 절삭 후 덧씌우기, 보조기층(선택층) 포설다짐, 프라임 코팅, 콘크리트포장, 차수용널말뚝 항타철거, '토류벽 단면가시설', '널말뚝 단면가시설', '널말뚝 양면가시설', '경암구간 단면가시설', CONC포장 깨기및적재, 석축 헐기및복구, 흄관 접합및부설, CONC포장절단, ASP포장 절삭, CON'C 타설, 유로폼, 합판거푸집, 철근 가공조립, 차선도색, 도로표지병, 호안블럭 해체및설치, 돌망태 해체및설치, 평떼, 가로수 굴취및식재	A. 질의하신 세부공종들은 표준품셈을 적용하였으며 가이드라인 '2'항 '가'호 '5)'목을 의거하여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9	Q.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 표준품셈이 아닌 임의의 품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유서 작성가능 여부? ex) 기계굴착압입, 표토제거및복구(주간), 토사천공(수직), GROUT 주입, 그라우팅(현탁액형), 복공판 운반및설치, 가설도로 축조및복구, 물푸기, 순성토운반(토취장), 잔토처리(연약지반처리공)	A. 질의하신 세부공종의 경우 해당 절감사유가 가이드라인 '1'항 '가'호 '1)'목에 해당하는 경우 절감사유로 인정합니다. 단, **단가산출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흡하여 타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10	Q. 순성토운반 거리가 L=20.1km인데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경로? 운반속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여건을 분석하여 장비대체 가능한지 여부?	A.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경로는 임의로 반영되었으며,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등을 변경할 경우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장비를 대체할 경우 절감사유로 인정이 가능하나 **단가산출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흡하여 타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11	Q. 시내도착도인 자재를 채취장 상차도와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비(현장도착도)로 계상하여 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A. 공사특성 상 현장도착도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12	Q. 'SK판넬 가시설'은 임의의 품으로 설계되었는데 사유서 작성가능 여부? 유사자재 변경가능 여부?	A. 'SK판넬 가시설'은 임의의 품으로 설계된 것으로 사유서 작성이 가능하나 유사한 자재로 변경할 경우 가이드라인 '1'항 '가'호 '1)'목 '마)'번에 의거하여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13	Q. '교통신호수'는 임의의 품으로 설계되었는데 '인력→인력+로봇조합'으로 사유서 작성가능 여부?	A. 로봇신호수는 부가적인 안전시설이며, '교통신호수'의 인력품 조정은 안전확보 등의 문제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14	Q. '이수교환'품은 임의의 품으로 설계되었는데 장비와 인력조합으로 변경 가능여부?	A. '이수교환'품은 재료비로만 구성된 것으로 장비와 인력조합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토목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15	Q. 장비 투입, 변경 및 효율적인 장비 대체에 따른 절감사유서 작성 시 장비제조사의 카탈로그 등의 장비 속도, 작업량 등을 인용한 경우 장비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동일한 장비임에도 카탈로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장비 적용시 장비업자 카탈로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 표준품셈으로 적용된 세부공종의 경우 절감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을 적용한 경우 표준품셈 없는 장비규격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장비로 평가합니다. 이때 특정장비 가격, 장비속도 등은 카탈로그 등으로 장비제조사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진위 확인은 인터넷 검색과 원본(발주자가 발행한 자료)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토목
16	Q. 특기시방서 '1-1-2 특기사항'의 '1-7항'의 경우 사유지 경계확인 관련하여 측량을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경계측량 시 정산되는지 여부?	A. 경계측량 시 측량비는 '회사취급분'으로 당공사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토목
17	Q. '강관부설'품은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비례식으로 산출하였는데, 절감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A. '강관부설' 세부공종은 표준품셈의 값을 단순 비례식으로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써 이를 변경할 시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18	Q. '강관부설'품을 토목분야의 '강관부설' 품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A. 가이드라인 '2'항 '나'호 '4)'목에 의거하여 유사품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계
19	Q. 군산G/S 및 옥구V/S 기밀시험 내역에서 CAP, WOL 등의 단가가 누락되었는데, 사급자재인지의 여부?	A. 질의하신 CAP, WOL 등의 자재는 새만금G/S 기밀시험 내역에 포함되었으며, 상기 자재는 재활용자재이므로 군산G/S 및 옥구V/S 기밀시험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계
20	Q. 토목분야만 품질관리비가 있고, 기계분야는 품질관리비가 없음?	A. 토목분야의 경우 아스콘 밀도 등 품질시험비용이 필요하여 내역에 반영되었고, 기계분야의 경우 별도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비가 없습니다.	기계